

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4. 5. 25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노사정협회의의 구성 내용 중, “근로자를 대표하는 자”의 위촉은, 관련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함으로써, 노동단체의 의견 반영 및 위촉에 따른 투명성 확보
- 구미시노사정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

2. 수정 주요골자

- 제정조례(안) 제3조(협의회의의 구성) ③항 중 “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”를
“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관련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자로 하고,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”로 함으로서,
- 노동단체의 의견 반영 및 위촉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, 구미시노사정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수정 내용

- 제정조례(안) 제3조(협의회의의 구성) ③항 중 “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”를

“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관련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자로 하
고,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”로
수정

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1. 제정조례(안) 제3조(협의회의 구성) ③항 중 “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”를
“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관련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자로 하고,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”로 수정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협회의 구성) ①협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위원장은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 수로 한다. 1. ~ 6. (생략)	제3조(협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. ②----- -----. ③ -----.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관련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,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 수로 한다. 1. ~ 6. (제정안과 같음)

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및 관계 행정기관(이하“노사정”이라 한다)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노사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
2.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
3.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4.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
5. 기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
제3조(협의회의 구성)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구미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
3. 공익을 대표하는 자
4. 시의회를 대표하는 자
5.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
6. 노동관계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
제5조 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,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당해 직위의 대행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.

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망, 질병,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2.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
3.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7조(회의) ①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2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토록 요청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④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,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, 시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.

제8조(실무협의회) ①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,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,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실무협의회 위원은 근로자단체·사용자단체,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, 시의회의원,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

제9조(회의록)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의견청취 등) ①협의회는 제2조의 각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,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노사대표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②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, 세미나의 개최, 설문조사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고,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) ①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조례의 폐지) 구미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